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 Contents

### 회계정보

-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 세무 및 법률정보

- 2022년 세법개정 안내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2021년 12월호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

2021년 12월호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및 분석  
및 시사점

**■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12.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요약】**

◆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은 핵심감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장사(2,212개사, 12월 결산)의 '20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이하 KAM) 기재실태를 분석

\*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KAM으로 선정하고, KAM 선정이유, 감사방법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도 제고

◦ (KAM 개수) 2,212개사의 1사당 KAM 기재 개수는 평균 1.09개로, KAM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전년(1.18개)보다 다소 감소

- 자산 규모가 클수록 KAM 개수가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1개)가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천억원미만(0.97개) → 1천억원~5천억원(1.10개) → 5천억원~2조원(1.22개) → 2조원이상(1.46개)

◦ (기재 항목)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을 주로 선정

-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 항목 제외시, 자산 2조원 이상은 공정가치 평가, 2조원 미만은 재고자산 항목의 비중이 높음

◦ (기재 실태)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한 사항(KAM 미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술 등)도 발견

◆ (시사점)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 위주로 KAM을 기재하고 있고 발견된 미흡사항도 미미한 수준으로, 핵심감사제도가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정보이용자도 감사보고서에 활용과정에서 KAM 기재사항을 고려할 필요

**2021년 12월호**
**분석개요**
**I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

- '17.12월 도입된 **KAM** 적용 대상이 '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상장사(코넥스 제외)로 확대\*됨에 따라,

\* ('18년) 자산 2조원 이상 → ('19년) 자산 1천억원 이상 → ('20년) 전체 상장사

- '20년 감사보고서의 **KAM** 적용 대상은 2,212개사(12월 결산법인 대상, 이하 동일)로, 전년('19년 : 1,312개사) 대비 크게 증가(900개사, 68.6%)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면 시행된 **KAM** 기재 실태를 분석하여 **KAM**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감독 업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2 분석 대상**

- '20년 감사보고서의 **KAM** 적용 대상인 전체 상장사(코넥스 제외) 2,212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연결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442개사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보고서를 분석

**시장 및 감사인 규모별 구분**
**자산규모 및 업종별 구분**

(단위 : 개사)				(단위 : 개사)			
구 分	유기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계	구 分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합계
대형 회계법인	436	278	714	제조업	68	1,305	1,373
증권 회계법인	213	679	892	서비스업	23	400	423
중소 회계법인	129	477	606	금융업	50	131	181
합계	778	1,434	2,212	도·소매업	15	141	156
				건설업	8	45	53
				기타	4	22	26
				합 계	168	2,044	2,212

**2021년 12월호**
**분석결과**
**II**
**분석 결과**
**1**
**KAM 개수**

◆ 상장사(2,212 개사)의 **KAM** 기재 개수는 1 사당 평균 **1.09 개**로 나타났는데, KAM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

\* '18년 1.76 개(자산 2 조원 이상) → '19년 1.18 개(자산 1 천억원 이상) → '20년 1.09 개(전체 상장사)

◦ 자산규모가 큰 회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KAM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총괄) 상장사의 KAM 기재 개수는 총 **2,413개**, 1사당 평균 **1.09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의 상장사\*와 비교할 때 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임

\* 영국 프리미엄 상장사 482개사 평균 KAM수 : **3.6개**(‘13년~‘18년 감사보고서 기준)  
FTSE 350 기업 중 조사대상(‘13년 153개사, ‘14년 278개사) 평균 KAM수: ‘13년 **4.2개**, ‘14년 **3.9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1사당 KAM 개수는 **1.46개**로, 1천억원 미만(0.97개), 1천억원~5천억원(1.10개), 5천억원~2조원(1.22개)의 KAM 개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KAM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자산규모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합계
<b>4개</b>	-	-	-	2	2
<b>3개</b>	1	7	6	7	21
<b>2개</b>	54	98	45	58	255
<b>1개</b>	696	838	198	100	1,832
<b>0개</b>	84	15	2	1	102
<b>합계</b>	<b>835</b>	<b>958</b>	<b>251</b>	<b>168</b>	<b>2,212</b>
(평균)	(0.97개)	(1.10개)	(1.22개)	(1.46개)	(1.09개)

**2021년 12월호**

□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평균 KAM 개수는 1.21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많은(18.6%) 것으로 나타남

**시장구분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계
4개	2	-	2
3개	17	4	21
2개	139	116	255
1개	608	1,224	1,832
0개	12	90	102
<b>합계</b>	<b>778</b>	<b>1,434</b>	<b>2,212</b>
(평균)	(1.21개)	(1.02개)	(1.09개)

□ (감사인 규모) 감사인 규모별 평균 KAM 개수는 대형이 1.21개로, 중견(1.03개) 및 중소(1.04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감사인 규모\*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대형 회계법인	중견 회계법인	중소 회계법인	합계
4개	2	-	-	2
3개	13	7	1	21
2개	118	74	63	255
1개	578	754	500	1,832
0개	3	57	42	102
<b>합계</b>	<b>714</b>	<b>892</b>	<b>606</b>	<b>2,212</b>
(평균)	(1.21개)	(1.03개)	(1.04개)	(1.09개)

\* 실무수습(2년) 종료 회계사 수 기준으로 구분(대형 600명 이상, 중견 120명 이상, 중소 40명 이상)

□ (업종) 업종별로는 건설업(1.13개), 도·소매업(1.13개), 제조업(1.10개)의 평균 KAM 개수가 업종 평균(1.09개)을 상회함

**업종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기타	합계
4개	-	-	1	-	1	-	2
3개	-	1	12	6	2	-	21
2개	7	24	152	40	29	3	255
1개	46	125	1,164	363	112	22	1,832
0개	-	6	44	14	37	1	102
<b>합계</b>	<b>53</b>	<b>156</b>	<b>1,373</b>	<b>423</b>	<b>181</b>	<b>26</b>	<b>2,212</b>
(평균)	(1.13개)	(1.13개)	(1.10개)	(1.09개)	(0.99개)	(1.08개)	(1.09개)

**2021년 12월호**
**2**
**KAM 기재 항목**

◆ KAM 기재 항목은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

□ (총괄) KAM 기재 항목은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順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동 항목들은 대체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임

\*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를 손실로 반영(예: 영업권 손상인식, 유형자산 손상인식, 투자주식 손상인식 등)

□ (자산규모)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항목,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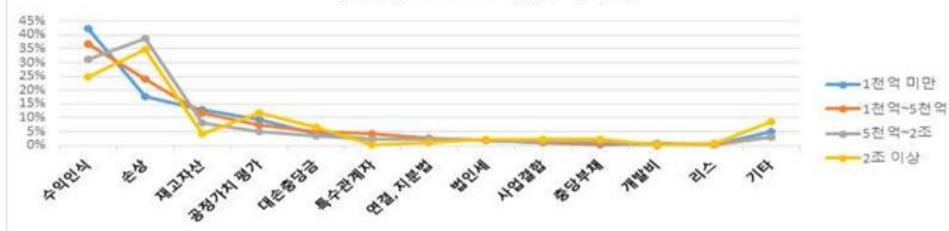
◦ 이는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자산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인 것에 주로 기인

**자산 규모별 KAM 기재 항목**

(단위 : 개, %)

구 分	1천억원 미만 (835개사)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958개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51개사)		2조원 이상 (168개사)		합계 (2,212개사)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수익인식	337	(41.8)	394	(37.4)	95	(31.1)	61	(24.9)	887	(36.8)
손상	143	(17.7)	253	(24.0)	119	(38.9)	85	(34.7)	600	(24.9)
재고자산	106	(13.1)	123	(11.7)	25	(8.2)	10	(4.1)	264	(10.9)
공정가치 평가	77	(9.6)	79	(7.5)	16	(5.2)	29	(11.8)	201	(8.3)
대손충당금	35	(4.4)	54	(5.1)	11	(3.6)	16	(6.5)	116	(4.8)
특수관계자	18	(2.2)	44	(4.2)	7	(2.3)	1	(0.4)	70	(2.9)
연결, 지분법	18	(2.2)	26	(2.5)	7	(2.3)	3	(1.2)	54	(2.2)
법인세	14	(1.7)	21	(2.0)	6	(2.0)	5	(2.1)	46	(1.9)
사업결합	10	(1.2)	10	(0.9)	4	(1.3)	5	(2.1)	29	(1.2)
충당부채	1	(0.1)	7	(0.6)	5	(1.6)	6	(2.4)	19	(0.8)
개발비	6	(0.8)	7	(0.6)	-	-	1	(0.4)	14	(0.6)
리스	1	(0.1)	3	(0.3)	2	(0.6)	2	(0.8)	8	(0.3)
기타	41	(5.1)	34	(3.2)	9	(2.9)	21	(8.6)	105	(4.4)
합계	807	(100.0)	1,055	(100.0)	306	(100.0)	245	(100.0)	2,413	(100.0)

[자산규모별 KAM 기재항목 비중]



**2021년 12월호**

□ (업종) 제조·서비스·건설업은 수익인식, 손상 順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수주산업)상 수익인식 기재 비중(88.3%)이 월등히 높았음

- 도·소매업은 손상, 수익인식 順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았고,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기재 비중도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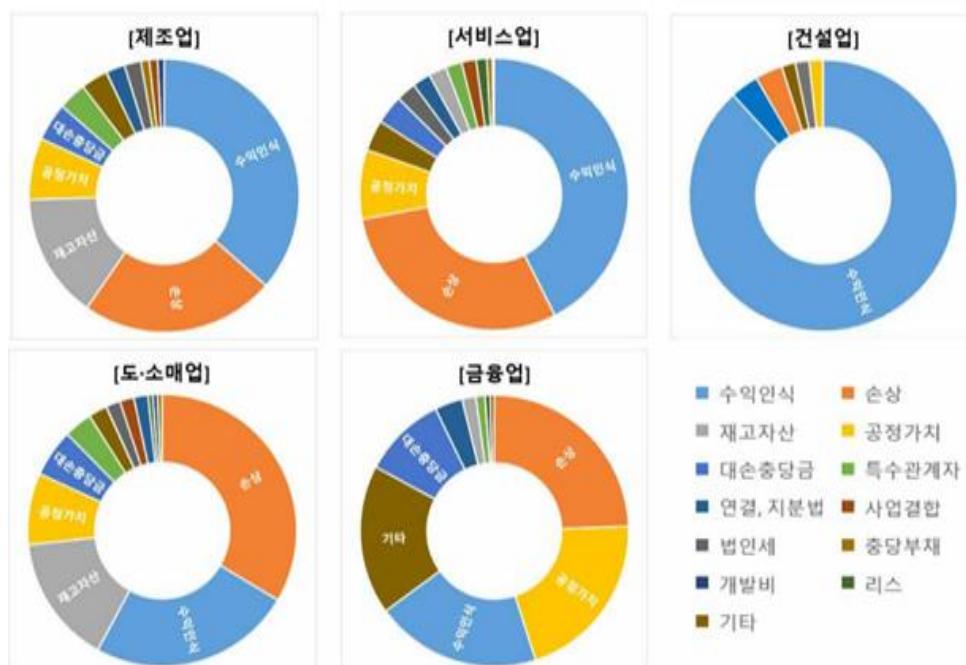
- 금융업은 금융자산·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손상, 공정가치 順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았고, 기타항목(18.3%)으로 보험의 기재비중(7.8%)도 다소 높게 나타남

### 업종별 KAM 기재 항목 비중

(단위 : %)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업
수익인식	36.4	42.5	88.3	24.4	20.0
손상	23.3	29.5	3.3	33.5	24.4
재고자산	14.9	2.2	-	15.4	1.7
공정가치 평가	7.3	8.2	1.7	8.5	20.6
대손충당금	4.5	3.5	3.3	5.7	10.0
특수관계자	3.4	2.0	-	3.4	1.1
연결, 지분법, 사업결합	3.2	3.9	-	3.4	3.9
법인세	2.0	2.4	1.7	1.7	-
충당부채	1.0	0.6	-	0.6	-
개발비	0.8	0.2	-	0.6	-
기타*	3.2	5.0	1.7	2.8	18.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리스 포함



2021년 12월호

3

## KAM 기재 실태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한 사항(KAM 미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술 등)도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

## 가. 형식상 기재 실태

□ 전체 점검대상(2,212개사)에 대하여 형식상 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①(KAM 미기재) KAM이 없을 경우에도 동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sup>\*</sup>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누락

\*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KAM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6)

(예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감사기준 701 A58)

② (소제목 누락)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sup>\*</sup>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소제목 기재를 누락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KAM을 기술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 11)

## 나. 내용상 기재 실태

□ KAM 적용 3년차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168개사)에 대하여 내용상 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① (특유상황 미언급) 일부 회사는 KAM 선정 이유 기술시 개별기업의 구체적이고 특유한(specific) 상황<sup>\*</sup>보다는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감사인이 KAM 선정 이유 기술시 기업 특유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감사기준 701 A44)

② (관련공시 미언급) KAM 기술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sup>\*</sup>을 포함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누락

\* 감사인은 KAM 기재시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reference)도 포함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 13, A40)

2021년 12월호

③ (계속기업 관련 미언급) 일부 회사는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경우에도 KAM 단락에 이에 대한 언급'을 누락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KAM 단락에 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5(b))

(예시) "우리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감사기준 701 A58,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6.2)

## 시사점 및 향후계획

### III

##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 위주로 KAM을 기재하고 있고 발견된 미흡사항도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도입 3년차인 핵심감사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❶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할 필요

◦ KAM을 미기재하거나, KAM 기재시 기업의 구체적 특유상황보다는 원론적·정형화된 서술을 하는 경우 등 일부 미흡사항이 있어,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감사인은 KAM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여 기업의 특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KAM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

### ❷ 정보 이용자는 감사보고서의 KAM 기재 사항에 유의할 필요

◦ KAM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사항이므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에 해당할 가능성

→ 정보 이용자는 KAM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보고서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KAM 기재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 (향후 계획)

### ❶ 「KAM 작성시 유의사항」안내 및 KAM 모범사례 발굴·배포

◦ 감사인이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KAM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KAM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회계현안설명회, 품질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유의사항 교육·안내

- 주요 항목별 KAM 기재 모범사례를 발굴·배포할 예정

2021년 12월호

## ②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KAM 기재사항 활용

- KAM이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분야, 중요한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분야 등에서 주로 선정되므로, **KAM 기재사항을 회계심사 업무(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등) 등에 활용하고,**

-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KAM 기재 사항을 점검할 예정**

참고 1  
핵심감사사항  
주요내용

### 참고 1 핵심감사사항(KAM) 주요 내용

- (의미) 핵심감사사항(KAM)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사항 중에서 선택됨

#### [핵심감사사항의 개념]



-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상 KAM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①KAM 선정 이유, ②KAM 감사방법 및 절차를 다루어야 함

#### [핵심감사사항 선정절차 및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 당기의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 필요사항 파악 및 KAM 선정

##### [3단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 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 ②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 (적용대상·시기)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시행일
자산 2조원 이상	2018.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19.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미만	2020.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2021년 12월호**

**참고 2**  
**핵심감사사항 기술**  
**사례 비교**

**참고 2**
**KAM 기술 사례 비교(KAM 항목 : 수익인식)**

구 분	우수사례 (기업의 특유사항 기재)	미흡사례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재)
① KAM 선정이유 및 ② 공시에 대한 언급	<p>연결실체는 천연가스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매월 각 거래처별로 계량기 검침에 따른 검침량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검침일 이후 결산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하여, 구매량에 거래처별 직전 월의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각 거래처별 사용량을 추정해서 미고지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a href="#">(주석 2 및 주석 3 참조)</a>.</p> <p>미고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연결실체 경영진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수반되고, 수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천연가스 매출 중 미고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p>	<p>수익은 연결회사의 주요 성과지표 중에 하나이며, 수익이 적절하지 않은 기간에 인식되거나 목표 또는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작되는 등 고유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p> <p><a href="#">(공시에 대한 언급 : 미기재)</a></p>
③ KAM 감사절차	<p>연결실체의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의 적정성 확인</li> <li>•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li> <li>• 경영진이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합성 및 주요 가정에 대한 확인</li> <li>• 연결실체의 미고지매출의 인식금액에 대한 재계산 검증</li> <li>• 미고지매출의 인식금액에 대한 재무보고일 이후 후속적 확인</li> <li>• 미고지매출 금액에 대한 분석적 절차</li> </ul>	<p>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 중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세부실증절차 수행</li> <li>• 보고기간말 전후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의 기간귀속을 확인하는 절차 수행</li> <li>•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확인</li> <li>• 매출유형별로 과거기간과의 실적비교 및 추세 분석 등 분석적 절차 수행</li> </ul>

**2021년 12월호**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2022년 세법개정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2년 세법개정안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 11. 30. (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 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본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공포되었고, 12.21.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9 개 법안이 추가로 공포되었습니다. 정부가 2021.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소득법 §21·법인법 §93 등)**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li> </ul> </li> <li><input type="radio"/> (소득구분) 기타소득</li> <li><input type="radio"/>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li> <li>-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 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li> </ul> </li> </ul> </li> <li><input type="radio"/>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li> <li><input type="radio"/> (시행시기) <u>‘22.1.1. 이후</u> 양도·대여하는 분부터</li> </ul>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22.1.1. → ‘23.1.1</li> </ul>

**<수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2021년 12월호**

**2. 1 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득법 §89①, ③)**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input checked="" type="radio"/> 실지거래가액 9억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input checked="" type="radio"/>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공포일(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소득법 §164의 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input checked="" type="radio"/>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input checked="" type="radio"/>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의무 없음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  <input checked="" type="radio"/>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삭 제>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2021년 12월호**
**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증견기업의 범위 확대 (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 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li> <li>○ 증견기업 : 매출액 <u>3천억원</u> 미만</li> </ul>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증견기업 : 매출액 <u>4천억원</u> 미만</li> </ul>

<수정이유> 증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득법 §56 의 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li> <li>-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            세청장에게 전송</li> <li>○ (공제한도 · 금액) 시행령에서 규정</li> <li>○ (공제방식) 소득세에서 공제</li> <li>○ (적용기한) '22.7.1. ~ '24.12.31.</li> </ul>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2021년 12월호**
**6.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 허용 기간  <input type="radio"/> 증여세 : 5년 <input type="radio"/> 상속세 <b>①</b> 가업상속재산 - 비중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비중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b>②</b> 일반 상속재산 : 5년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b>②</b> 일반 상속재산 : 10년

<수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시행시기> '22.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7.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16의 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input type="radio"/> 한도 : 3천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input type="radio"/> 한도 : 5천만원

<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시행시기> '22. 1. 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 12월호**
**8.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 (조특법§16 의 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input checked="" type="radio"/>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input checked="" type="radio"/> (좌 동)
<input checked="" type="radio"/> 요건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input type="checkbox"/>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input checked="" type="radio"/> (특례내용)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대상 확대 관련 개정규정은 '21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조특법 §26 의 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input checked="" type="radio"/>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특례 적용기간 변경 <input checked="" type="radio"/> 5년 → 3년

<수정이유> 과세특례 적정화

2021년 12월호

최신 세무예규  
판례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710, 2021.11.30)

## (사실관계)

- A법인은 석유가스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에 4개법인이 발행한 후순위공모사채에 143억원을 투자하였음
- A법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해당 사채 투자금액 전액(143억원)을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2020년 4월과 5월에 법원은 4개의 사채발행법인에 대하여 모두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였으나, A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을 누락하였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상차손을 계상하여 회계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체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회신)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발행법인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21년 12월호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632, 2021.12.07)

##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 (질의내용)

-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021년 12월호

## 업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금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li>▪ 조직, 인사 전략 / HR</li><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ul>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